[실습지원비 관련]

1. 실습지원비란?

1)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.

2) 실습지원비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.

예) 교육시간비율을 25% 선택 시,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75%의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.

***교육시간비율은 10% ~ 25% 사이로 필수 선택입니다.**

***교육시간 증빙은 학생 보고서로 대체합니다.**

***학교제시 기준 충족 시 -> 현장실습 신청서에 기재한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**

3) 학교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나가는 기준은 교육시간비율을 포함한 100%의 금액을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했을 시 해당 됩니다.

4) 지급 방식: 월/주 기준으로 당월/익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길 권장

5)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.

2. (선택 사항) 학교 -->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기준

1) 실습지원비 100%(교육시간 비율 포함)의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한다.

★실습지원비 산정★

*산출 식

= [최저임금 x 주(48시간) x 실습기간]

= 교육시간을 포함한 현장실습지원비 100% (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)

따라서, 학생에게 교육시간을 포함한 현장실습지원비 100%를 세후로 지급한 경우에만 학교가 실습기관에게 교육시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2) 학생 선발 후 학교가 명시한 날짜까지 실습지원비 지급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.

- 제출서류: 사업자등록증, 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

-> 기한 내 서류 제출한 기업에게만 지급됩니다. 따로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.

3. 규정

1)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 2021-19호) 주요 내용 발췌

제30조 지도감독

3.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(이하 "국고 및 지방비") 지급 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.

4.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
2)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발췌

실습지원비(61P) : 비용과 부담이 아닌 투자와 보상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

- 이러한 기준 변화로 기존 '현장실습'제도의 '실적'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, 현장실습 제도 개선 추진은 더 이상 학교의 실적이나 일부 실습기관의 저비용 인력활용 등이 아닌,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.

■ 실습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란? 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지급 시 당해연도 최저임금(월환산액 기준) 100% 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하고, 이후 법인세(또는 종합소득세) 신고 시 지급한 실습지원비 중 최저임금(월환산액 기준) 기준 25%를 세액공제하는 방법입니다.

※25%는 표준화된 국고지원금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.

-> 교육시간비율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.

- 세액공제 제도는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(월환산액) 100% 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에서, 국고지원비 상한액 수준(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25%) 만큼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므로 향후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현행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등 관련한 여러 제도 기준도 동반 변경되어야 합니다.